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반의 교육·훈련 과정 재구성 및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48조제1항)

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기간(2년) 삭제 및 형식의 재구성(안 별표 3의2)

다.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2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방법·절차 및 신고·보고해야하는 감염병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의 종류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3.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4.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및 장사방법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5.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6.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10 및 별표11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별표 3의2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별표 3의2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호(중전의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을 별
지와 같이 한다.

2. 그 밖에 교육·훈련기간, 교육횟수·내용 등 역학조사관 교육·훈
련 과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u><신 설></u>	1. 제6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방법·절차 및 신고·보고해야하는 감염병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u><신 설></u>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의 종류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u><신 설></u>	3.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u><신 설></u>	4.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및 장사방법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

<신 설>

<신 설>

1. ~ 3. (생 략)

② (생 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제16조의3 관련)

1.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지속교육을 포함한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나.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와 관련된 역량의 유지 및 함양을 위해 매년 제2호다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의 세부 내용

가. 기본교육: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 및 책임,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감염병 감시체계 등 역학조사 관련 기본과정

나. 지속교육: 역학조사 통계 산출 및 자료 분석, 감염병 진단 및 실험실 검사 등 역학조사 관련 심화과정

다. 보수교육: 감염병 관련 국내·외 현안, 최신 역학조사 사례 검토 등 역학조사 역량 유지 및 함양 교육

3. 그 밖에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까지)

5.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6.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10 및 별표11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022년 3월 1일(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

7. ~ 9.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제16조의3 관련)

1.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별 세부 내용

구분	교육내용
기본교육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 및 책임,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감염병 감시체계 등 역학조사 관련 기본과정
지속교육	역학조사 통계 산출 및 자료 분석,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역학조사 방법론 등 역학조사 관련 심화과정
보수교육	감염병 관련 국내·외 현안, 최신 역학조사 사례 검토 등 역학조사 역량 유지 및 함양 교육
기타	역학조사 실무역량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및 훈련 등

2. 그 밖에 교육·훈련기간, 교육횟수·내용 등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입원 ·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 · 격리 사유			
입원 · 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 · 격리 장소	[] 병원 · 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 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입원 ·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 · 격리 사유			
입원 · 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 · 격리 장소	[] 병원 · 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3) 719 - 7136